



디스플레이산업 핵심인력 보안가이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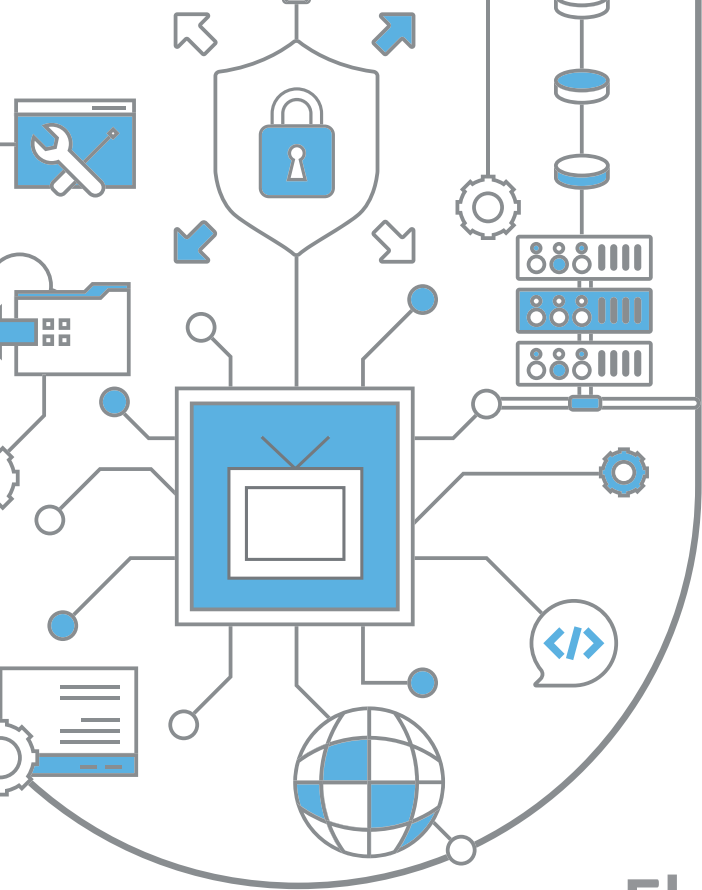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본 가이드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기술보안협약회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문을 받아 만든 보안가이드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 핵심인력 보안가이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앙대학교
GJONG-ANG UNIVERSITY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도모센터

contents

1. 인사말	3
2. 핵심인력 보안관리 모형	4
3. 단계별 핵심인력 보안관리 가이드	5
• 채용	5
• 재직	7
• 퇴사	18
별첨	20

1. 인사말

디스플레이 업계 종사자 여러분!

최근 기술 패권주의가 강해지며, 어느 때보다도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유출 사례 공유를 통해 보안 인식을 제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도화되는 IT 기술의 출현과 근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늘 새롭게 진화하는 탈취 수법을 사전에 예방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민간주도의 산업기술보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유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 활동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소재 기업용 실무 보안가이드를 발간(2019년)한데 이어, 이번 2기에서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취급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디스플레이산업 핵심인력 보안가이드'는 핵심인력의 채용부터 퇴사에 이르는 전주기에 대한 관리 지침을 포함, 중소·중견 기업이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관리 방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보편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의 강화된 관리 지침과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례를 공유하여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제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인력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기대하기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가이드가 산업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핵심인재'의 이탈로 인한 기술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본 가이드를 발간하고자 도움을 주신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그리고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기술보안협의회 실무위원 일동

2. 핵심인력 보안관리 모형

본 가이드는 디스플레이산업 핵심인력 채용에서부터 재직 및 퇴직까지의 전 주기적인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안관리 항목을 참고하여 기업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소재부품장비기업, 패널제조기업).

단계	핵심인력 보안관리 항목	
1. 채용	① 채용 검증	
	② 보안 서약	
2. 재직	① 핵심인력 대상선정	
	② 산업보안 담당자지정	
	③ 핵심인력 산업보안교육	
	④ 산업보안 문화조성(캠페인)	
	주요업무 보안관리	⑤ 보안활동 면담관리
		⑥ 외부접촉 보안관리
		⑦ 자문중계업체 보안대응
		⑧ 재택근무 보안관리
		⑨ 해외사업장파견 보안관리
		⑩ 기술유출 징후탐지와 대응
		⑪ 고용계약 갱신
3. 퇴사	① 권한조정과 회수관리	
	② 보안서약과 퇴직관리	

3. 단계별 핵심인력 보안관리 가이드

채용

① 채용 검증

입사 지원자로부터의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이전직장에서의 평판도 조회 및 검증작업을 채용 전에 진행한다.

(신입직원)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사전검토
- 보유지식(역량)과 인성검증을 위한 면접진행

(경력직원)

- 이전 직장에서의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내용 확인

보안사고 사례

A사에서 B사로 이직한 직원이 A사에서 습득한 지식과 임의로 반출한 자료를 B사 업무에 실제적으로 활용함



- 채용예정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일반적 비밀유지의무 포함)
- 고용계약서와 함께 준거법에 근거한 별도의 보안서약서[별첨1]를 징구한다(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 업무내용과 성과에 대한 기업귀속 고지
 - 업무정보 무단복제, 사적사용, 제3자 유출금지 등
 - 필요시 전자메일 점검과 정보전송내역 확인 동의
 - (경력직원) 이전 직장에서 수집한 정보의 보관 및 금지

보안사고 사례

연구원 A는 중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연구정보를 유출하였으나, 사전에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처벌 한계성이 발생함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



- ① 업무내용과 성과에 대한 기업귀속
- ② 업무정보 무단복제 · 사적사용 · 제3자 유출금지
- ③ 필요시 전자메일 점검확인 동의
- ④ 이전직장 수집정보 활용금지 등...

- 핵심인력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여 주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설계, 제조(생산), 운영 등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력을 의미한다.
- 핵심인력은 업무내용과 성과수준, 충성도, 보안활동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기술에 대한 개발·관리·관여 수준
 - 해당 업무에 대한 숙련도(전문지식과 경험)
 - 기업에 대한 업무충성도와 보안활동 참여정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핵심인력의 경우, 해당인력에 대한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보안우수 사례

A사는 핵심인력을 별도로 선정하여, 차별화된 우대사항을 지원하고 있음(직책 부여, 상여금 지급, 안식 휴가 등)

핵심인력 선정

주요기술 관여수준,
해당업무 숙련도,
업무충성도,
보안활동 참여정도 등...



- 자체 산업보안 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의 산업보안 관리부서 및 담당자(산업보안담당관)를 지정한다.
- 산업보안담당자(산업보안담당관)는 산업보안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산업보안학과 전공자, 산업보안관리사 등 전문가), 산업보안 업무를 위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적인 운영을 진행한다.
 - 경영층이 참여하는 산업보안위원회 운영
 - 자체 산업보안 관리규정에 대한 제 개정
 - 산업보안 추진계획 수립·조정·감독
 - 사내 보안 조직간 또는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락 체계 구축
 - 산업보안 연구보안 실태점검과 보안개선대책 마련
 - 산업보안 사고대응(보안사고 보고와 조치, 사고 방지대책 등)
 - 기타 산업보안 유관기관 협력 등 연구보안과 관련된 제반 업무

보안우수 사례

산업보안 전담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미 보유기업보다, 산업보안수준이 1.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산업보안 담당자 지정



- 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하여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산업보안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법정교육 4).
- 산업보안교육은 기업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기·횟수·대상·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수립한다(1년 2회 이상 대면교육 + 오프라인 교육, 외부강사활용(국가정보원 등).
- 교육대상별로 산업보안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신입, 재직, 해외출장, 퇴직, 외국인 연구원 등 교육대상별로 특화된 산업보안교육 진행).
- 산업보안 교육자료는 기업 현황에 부합하는 교안을 작성하여 진행한다.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관련 준거법 세부조항(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 기술유출사고 사례와 기술보호 중요성
 - 자체 산업보안 관리규정과 절차(준수의무, 포상과 처벌 등)
 - 자체 산업보안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와 미흡사례
- 산업보안 교육진행 이후에는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와 개선사항을 수집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하도록 한다.
 - 산업보안 교육 참석자 현황 유지·관리
 - 산업교육불참자 재교육 계획수립 및 이행
 - 산업보안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교육후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향후 보안교육 개선사항에 반영

보안우수 사례

A사는 보안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기업 상황을 고려한 직무 및 기능별 맞춤형 보안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산업보안 관련사항들을 수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보안 홍보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표어, 포스터, 삽화, 동영상, 기념품 등)(별첨 2).
- 산업보안 교육내용을 담은 홍보물은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제작·배포되어야 한다(산업보안 관리규정, 산업보안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등).

보안우수 사례

A사는 보안문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보안공감대 형성을 다양한 홍보와 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SECURITY에서 U와 I가 없으면 보안도 없습니다.”)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수준을 확인하고, 보안의무 고지를 위한 정기적인 면담을 진행한다.

- 준거법과 보안서약에 따른 보안의무 인지여부 확인
- 업무환경과 관련된 보안위험요소 조사(경쟁사로부터의 이직제안, 업무평판에 관한 사실내용 확인 등)
- 핵심인력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건의사항 수집

보안우수 사례

A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제고와 함께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보안 면담을 진행하고 있음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와의 접촉현황(협력사, 고객사, 경쟁사, 기타 등)에 대해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절차를 진행한다[별첨 3].

- 사전신고 대상은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메신저, 전화, 문자 등의 유·무선 연락도 포함되며, 외부와 업무관련 정보를 전달·공유한 모든 접촉을 포함
- 사전신고 내용은 접촉대상, 접촉일정(시간, 장소), 접촉목적, 지참할 정보내용과 지참방법 등을 포함하며, 사전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함
- 외부와 접촉 후에는 사전신고 내용에 확인과 함께 접촉내용, 공유된 정보내용 등에 대해 부서장에게 보고

보안사고 사례

직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협력사 직원과의 보고되지 않은 회의(모임) 기업 중요정보를 노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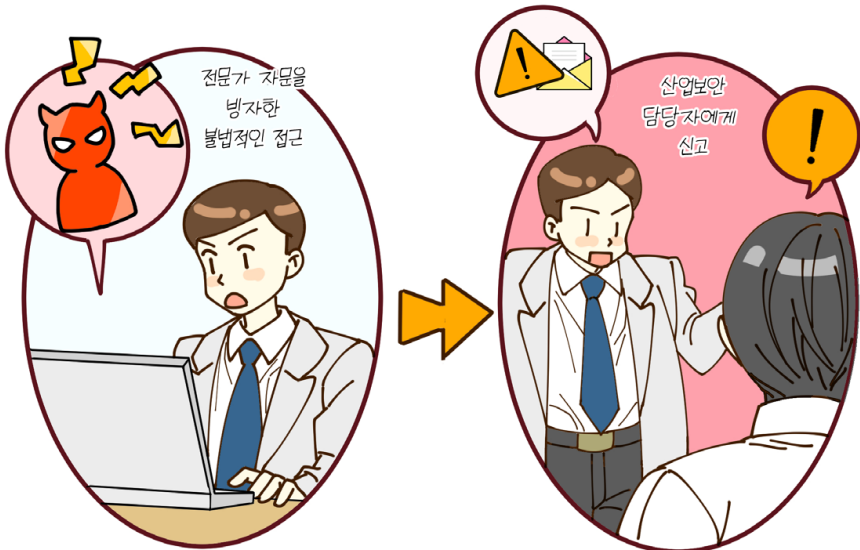


유료자문업체(Expert Network Service)로부터 핵심인력에게 전문가 자문형식을 빌어 불법적인 접촉이 시도(진행)될 경우에는 산업보안 관리부서 및 담당자(산업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 외부대상의 임의자문활동을 금지하며, 자문필요성이 있을 경우 부서장으로부터 관련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산업보안 관리부서 및 담당자(산업보안담당관)에게 불법적인 접촉에 관한 수신내용을 신고
-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접촉에 대해 유관기업들과의 사례공유와 함께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국가정보원 등)

보안사고 사례

경쟁업체 A사는 일반적인 업계동향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형태를 빌어 B사 임직원에게 접근하여 핵심기술 관련정보 수집을 시도



- 기업부서별 비밀과 대외비 현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를 사전에 설계하고, 부서장 및 산업보안 관리부서 및 담당자(산업보안담당관)로부터 재택업무 범위와 보안대책에 관한 적절성을 확인받는다[별첨 4].
 - 카페와 공원과 같은 개방된 장소가 아닌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공간에서 재택근무 실시
 - 기업에서 제공된 자산(단말기)만을 사용하여 기업 네트워크(업무망)에 접속사용
 - 허가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임의로 추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를 금지
 -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고, 필요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반드시 검사
 - 신뢰할 수 없거나 개방형 무선인터넷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성이 확보된 인터넷 망을 사용
- 산업보안담당자는 기술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재택근무 현황과 정보반출(접근, 열람 등)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한다.
 - 기업 네트워크(업무망)에 대한 모든 접속은 단일계정으로 통합인증을 수행
 - 사전 허가된 사용자와 단말기만이 기업 네트워크(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의 접속 환경을 구축
 - 시스템 로그를 상시 관찰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되는 보안절차를 진행
- 재택근무가 종료되면, 반출된 정보를 확인하여 회수하고 사후 보안조치를 수행한다(재사용 금지, 제3자 전송금지 등).
- 해외로의 기술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보안담당자는 외부기관(국가정보원)에 신고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보안사고 사례

A사 직원이 재택근무 중 보안취약점을 악용하여, 기술자료를 임의로 열람·촬영하여 해외로의 유출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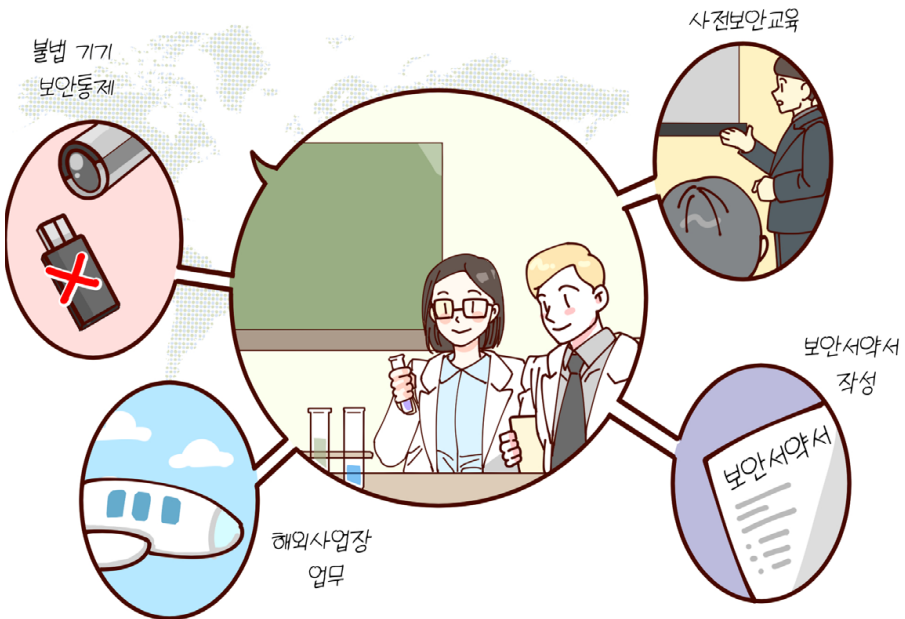
재직

㉠ 해외사업장파견 보안관리

- 해외사업장 업무관련 보안유의사항에 대해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 해외사업장으로 파견되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주요기술에 대한 유출·공개·무단사용 금지와 함께 파견기간 및 파견종료 후 기업의 동의 없이 국내외 동종업계 및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동종업계를 영위하는 기업과 자문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별첨 5].

보안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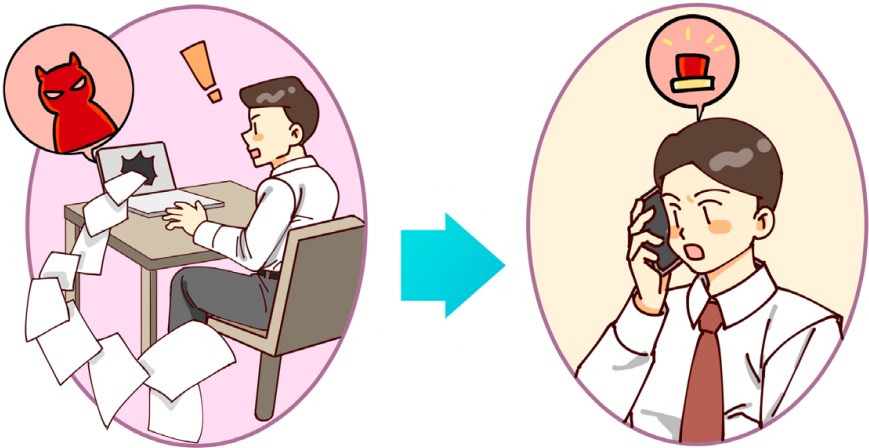
A사는 해외사업장에 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본사수준의 보안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산업보안담당자는 핵심인력의 기술유출에 관한 이상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돌변
 - 연구개발 진행보다 성과물 확보에 집착
 - 담당업무내용과 관련 없는 다수의 정보 보유
 - 외부에 무단으로 내부정보가 반출된 흔적(전자메일, 메신저, 이동형 저장장치, 문서출력 등)
- 핵심인력 업무와 관련된 기술유출 정황이 확인된 경우, 산업보안담당자는 내부보고와 외부신고(국가정보원, 경찰 등)를 진행한다.

보안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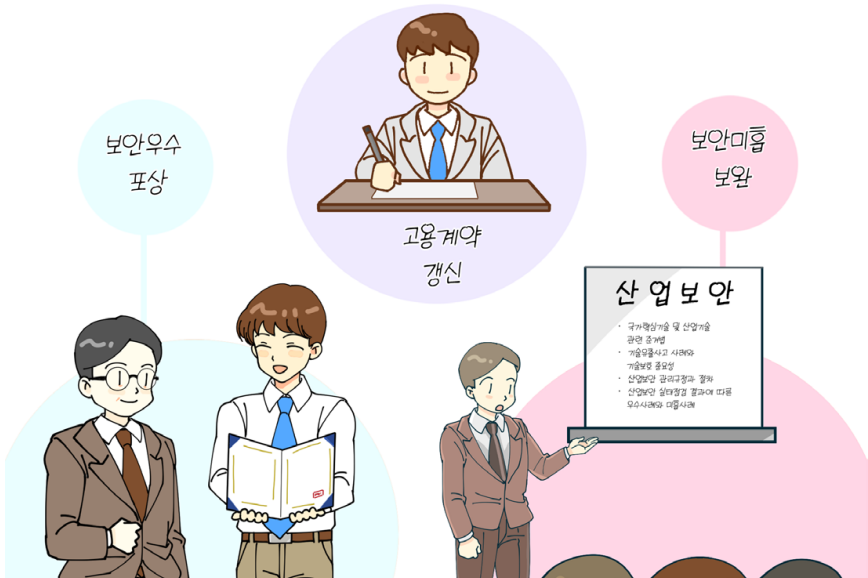
기술유출 보안사고가 발생한 A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량의 암호문서 해제, 중요문서 파일분할, 외부 상용메일 사용흔적 등의 기록이 발견됨



-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간섭, 규제, 이완 등을 배분하고 우대와 책임을 적절히 조합하여 관리한다.
- 핵심인력에 대한 고용계약 갱신을 진행할 때에는 업무성과와 함께 보안활동 참여수준을 확인한다.
 - 보안활동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금전적(보안수당 등) 또는 비금전적 보상(보상휴가, 직무연수, 승진 등)을 지급
 - 보안 + 활동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맞춤형 산업보안교육을 진행하며, 보안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처리
- 핵심인력에 대한 순환보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서이동 및 업무변경 등 핵심인력의 고용조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경이전에 습득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이전에 사용된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변경과 회수조치 등이 산업보안담당자 관리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산업보안담당자는 핵심인력에 관한 부서 및 업무변경내용을 항상 기록·유지하고, 해당부서 및 산업보안 관리부서와 공유한다.

보안우수 사례

A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와 통제보다는 적정수준 이상의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직무보상제도 활성화) 자율적인 보안준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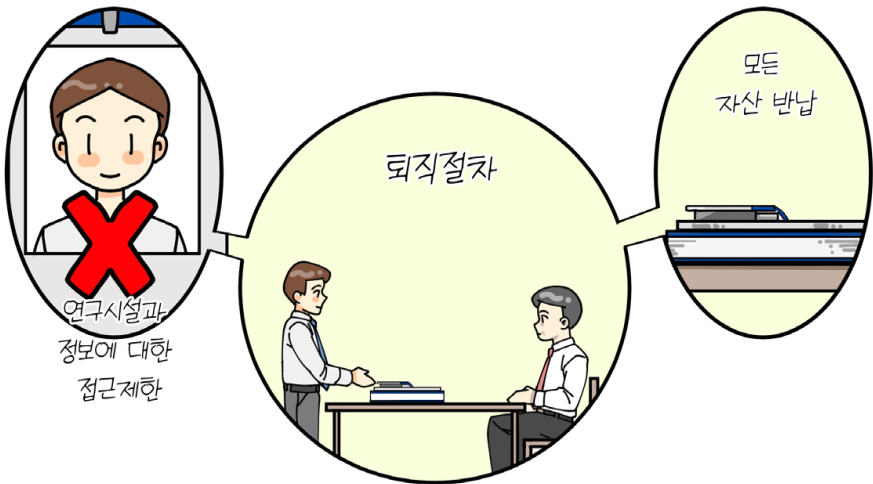
① 권한조정과 회수관리

산업보안담당자는 퇴직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사유를 검토하고 권한조정과 자산회수를 진행한다.

- 퇴직예정 직원이 퇴직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업무태도(행동)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이동형 저장장치 반출, 외부 상용메일계정 사용, 대용량 정보출력 등)
- 퇴직예정 직원에게 기업의 모든 자산을 반환하도록 하며(연구노트, 저장장치 등),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제한(출입증, 전자메일계정, 정보시스템 접속계정 등)

보안사고 사례

이직을 예정하고 있는 직원A가 반납하지 않은 이동형 저장장치에서 제품 개발소스코드,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등이 불법으로 저장된 것을 발견함



퇴사

② 보안서약과 퇴직관리

- 준거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부출연기관법 등)(별첨 6).
 - 일정기간 국가핵심기술 및 주요기술 정보를 누설·오용하지 않을 의무사항과 함께, 준수위반에 따른 책임부과(처벌)내용 포함
 - 일정기간 경쟁기관 취업금지를 요청할 경우(전직금지약정), 그에 상응하는 보상내용 포함
 - 수리된 보안서약서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일정기간동안 보관
- 업무 인수인계까지 명확하게 완료되어 다른 누락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상 직원의 퇴직을 승인한다.
- 퇴직 직원이 이직할 기업(기관)에게 이전기업에서 수행한 정보를 입수·제공하도록 암묵적인 요청·묵인·방조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보안우수 사례

A사는 동종업체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 이상의 보상체계 마련과 함께 퇴직 직원들에 대한 취업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별첨 1]

(채용예정) 보안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취업규칙, 관리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호 대상

- ① 중요정보로 표시된 기술자료, 공장배치도, 제품 설계도면, 금형, 시제품 등과 함께 제조 및 판매 매뉴얼, 제조원가, 판매 및 가격 결정자료, 거래선 자료, 인력정보 등
- ② 통제구역, 시건장치, 비밀번호 등으로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시스템, 보관함과 함께 통제구역에 보관된 기록매체, 문서, 물건, 정보 등
- ③ 그 밖에 회사가 중요정보로 지정하고 표시하였거나, 회사가 중요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비밀정보

2. 재직 중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등을 재직 동안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통제구역,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을 복제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보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입사 전 또는 재직 중에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 그 정보의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에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사와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7. 본인은,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회사가 불법 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 우편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 내역, 기타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 등의 누설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주식회사 ○○○ 귀하

[별첨 2]

산업보안 홍보 포스터(예)



[별첨 3]

외부인 접촉 사전 신고서

- 작성자
- 외부접촉 일정
 - 일시
 - 장소
- 외부접촉 대상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외부접촉 목적(사유)
- 정보 및 자료 내용과 지참방법(해당 사항이 존재할 경우)
- 외부접촉 승인자
 - 성명
 - 직책
 - 보안 주의사항

외부인 접촉 사후 보고서

- 작성자
- 외부접촉 일정
 - 일시
 - 장소
- 외부접촉 대상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외부접촉 목적(사유)
- 정보 및 자료 공유내용(해당 사항이 존재할 경우)
- 외부접촉 확인자
 - 성명
 - 직책
 - 보안 확인사항

[별첨 4]

재택근무시 사외접속 주의사항(예)

1.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접속한다.
2. 회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타 인원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고, 화면촬영, 화면보여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3. 접속계정과 비밀번호는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4. 사내 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파일을 PC에 다운로드한 경우, 업무 목적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한다.
5. 모든 정보접근과 취급행위는 회사보안을 목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가 요구할 경우 사외에서의 가상PC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별첨 5]

해외사업장 파견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해외사업장으로 파견됨에 있어 업무상 얻게 되는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정보 등의 비밀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정보는 보안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 이상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
2. 본인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 정보의 유출·공개 및 무단 사용 등의 침해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보안주관부서로 신고한다.
3. 본인은 파견 기간 및 파견 종료 후 ○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국내·해외동종업계 및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동종업계를 영위하는 회사와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연구·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업체 경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별첨 6]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예)

당사자는 귀사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또는 주요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등 관련 업무 수행

- (예시) 서약자는 재직 중에 별첨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관련 업무 수행

2. 퇴사자의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 비밀유지 의무

- (예시) 퇴사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 자료 반납 및 자료유출이 없음을 확인
- (예시) 퇴사 후 사측의 동의없이 국가핵심기술의 공개, 사용, 누설 등을 금지

3. 경업금지의무

- (예시) 퇴직 후 ○년간 귀 사의 국내·외 경쟁업체 ○사, ○사, ○사 등으로 전직 금지 또는 경쟁업체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용역계약 미체결
- (예시) 제3의 업체에 취업하여 경쟁업체가 진행하는 회의, 컨설팅, 연구, 개발 등의 업무에 미증사

4.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

- (예시) 경업금지 약정 대가로 금 ○○○원정을 별도로 수령

5.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

- (예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별로 금 ○○○원(지급액의 ○배)을 소속사에 지급하며,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는 별도로 사측에 반환
- (예시) 위약별 지급외 서약서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시 별도의 배상책임 확인

6. 정보제공 의무

- (예시) 영업금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 후 영업금지 기간내에 거주지, 직장, 출입국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사측에 제출할 의무 존재
- (예시) 주기적인 자료제출 미이행시 사측의 출입국 정보 확인에 동의*, 경쟁업체 전직 및 기타 경쟁업체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동의
 - ※ 사측의 출입국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퇴직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내용 등 포함)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당사자는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고, 손해배상 또는 기타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회사와 퇴사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별첨] 수행 업무 내용 및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영업자산 내용



디스플레이산업
핵심인력 보안가이드